

 Daechang Seat Co., LTD.	ESG	표준번호	DSCA-ESG-03
		제/개정일자	2024.10.17.
	협력사 행동 규범	제/개정번호	1
		페이지	1/6

〈 목 차 〉

1. 목 적
2. 적용 범위
3. 협력사 행동 규범
 - 3.1) 인권 및 노동
 - 3.1.1) 근로조건 및 임금
 - 3.1.2) 결사의 자유
 - 3.1.3)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 3.1.4)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 3.1.5) 안전 보건
 - 3.2) 환경
 - 3.2.1)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3.2.2) 수자원 관리
 - 3.2.3) 대기오염물질 관리
 - 3.2.4) 자원 순환 및 폐기물 관리
 - 3.2.5) 화학물질 관리
 - 3.2.6)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
 - 3.2.7) 토양/소음진동
 - 3.2.8) 지역 공동체의 토지, 산림 및 수자원 권리 및 강제 퇴거
 - 3.2.9) 동물복지
 - 3.3) 윤리
 - 3.3.1) 투명경영 및 반부패
 - 3.3.2) 이해상충 방지
 - 3.3.3) 공정경쟁 및 반독점
 - 3.3.4) 내부 고발자 보복 금지
 - 3.3.5) 위조부품 방지
 - 3.3.6)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 3.3.7) 정보보호
 - 3.3.8) 정확한 기록 및 데이터 보호
 - 3.3.9) 민간 또는 공공 보안군 사용 금지
 - 3.3.10) 책임 있는 원자재 관리(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 3.3.11)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존중 및 침해 방지
4. 협력사의 책임 및 역할

 Daechang Seat Co., LTD.	ESG	표준번호	DSCA-ESG-03
		제/개정일자	2024.10.17.
	협력사 행동 규범	제/개정번호	1
		페이지	2/6

개 정 이 력 서				
개정 No.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기안 부서	기안자
0	2023.11.01	초도 제정		
1	2024.10.17	적용 범위 추가		

 Daechang Seat Co., LTD.	ESG	표준번호	DSCA-ESG-03
		제/개정일자	2024.10.17.
	협력사 행동 규범	제/개정번호	1
		페이지	3/6

1. 목적

디에스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고객 중심, 투명한 경영 및 혁신 경영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 대 원칙에 기반한 『디에스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공개한다. 본 행동규범은 추후 국가별 법령과 국내외 산업 추이 및 업계 동향을 검토 및 반영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구매협력, 외주협력, 외주 임가공협력, 용역 및 환경 위탁업체 (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 재평가, 지도 및 지원 등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협력사 행동규범

3.1) 인권 및 노동

3.1.1) 근로조건 및 임금

협력사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법적으로 규정하는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 및 기타 보상 요소들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복리후생을 근로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1.2)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처벌이나 불법적 간섭 없이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결사, 조직 및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의 권리를 인정한다.

3.1.3)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협력사는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적 고용 최소 연령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해야 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특정 인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업무나 서비스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3.1.4)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

협력사는 각국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구성원을 포함한 파트너사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다른 생각이나 관점 · 신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다. 인종, 종교, 연령, 국적, 사회적 · 민족적 출신, 성적 취향, 성별, 결혼 여부, 정치적 견해, 장애 등을 사유로 채용, 보상, 혜택, 승진, 징계, 해고 또는 은퇴와 같이 고용에 관련된 제반 조건에 대해 부도덕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1.5) 안전 보건

협력사는 안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예방 체계 및 교육 제공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Daechang Seat Co., LTD.	ESG	표준번호	DSCA-ESG-03
		제/개정일자	2024.10.17.
	협력사 행동 규범	제/개정번호	1
		페이지	4/6

3.2) 환경

3.2.1)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기반 마련, 감축과 재생 에너지,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을 위해 노력한다.

3.2.2) 수자원 관리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 감축과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은 법적 기준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2.3)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규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법적 기준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3.2.4) 자원 순환 및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한다.

3.2.5)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특히 협력사의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비규제물질로 전환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3.2.6)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

협력사는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파괴 방지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존 지역에 대한 침해를 하지 않으며 사업 관련 산림 벌채를 최소화해야 한다. 협력사 사업장 소재지 내 동물 보호를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이며 사업으로 인한 산림 벌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3.2.7) 토양/소음진동

협력사는 사업장 내 소음진동, 토양오염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2.8) 지역 공동체의 토지, 산림 및 수자원 권리 및 강제 퇴거

협력사는 사업장 인근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에 대해 토지와 산림 및 용수에 대한 접근에 대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점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2.9) 동물복지

협력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불가피한 실험 시 협력사 사업장 소재지의 법령과 국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Daechang Seat Co., LTD.	ESG	표준번호	DSCA-ESG-03
		제/개정일자	2024.10.17.
	협력사 행동 규범	제/개정번호	1
		페이지	5/6

3.3) 윤리

3.3.1) 투명경영 및 반부패

협력사는 뇌물, 횡령, 돈세탁 등 부패 관련 행위를 하지 않으며, 디에스시로부터 유리한 특혜를 받기 위해 디에스시 소속 직원에게 뇌물, 선물, 금전, 향응,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3.3.2) 이해상충 방지

협력사는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한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3.3) 공정경쟁 및 반독점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준수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협력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3.3.4) 내부 고발자 보복 금지

협력사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협력회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임직원과 공급업체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익명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5) 위조부품 방지

협력사는 제품 관련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승인되지 않거나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 및 부품의 생산,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고객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3.6) 수출 통제 및 경제 제재

협력사는 제품 및 기술 관련 국제적 무역 제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여 제한 국가 및 개인과의 거래를 해서는 아니된다. 원산지 증빙 서류 등 관련 문서를 절차에 따라 관리하며 필요시 현황 파악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3.3.7) 정보보호

협력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 또는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목적에 맞게 사용 후 파기하며 제 3자 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3.3.8) 정확한 기록 및 데이터 보호

협력사는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대한 정확한 기록 책임이 있으며,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상표권과 기밀 정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해야 한다.

3.3.9) 민간 또는 공공 보안군 사용 금지

협력사는 고문, 비인도적 위해, 신체적 상해 또는 결사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민간 또는 공공 보안인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Daechang Seat Co., LTD.	ESG	표준번호	DSCA-ESG-03
		제/개정일자	2024.10.17.
	협력사 행동 규범	제/개정번호	1
		페이지	6/6

3.3.10) 책임 있는 원자재 관리(분쟁광물 및 책임광물)

협력사는 디에스시와 거래하는 물품 제조 시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필요시 협력사에 대하여 분쟁광물의 원산지 파악을 위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 특히 코발트, 금, 탄탈륨, 주석, 텅스텐 등의 물질 및 제품 내 포함된 알루미늄/보크사이트, 천연 고무, 스틸/아이언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2. 필요 시,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CMRT, 분쟁광물 보고 템플릿), 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MRT, 확장 광물 보고 템플릿)을 구축 후 활용한다.
3. 협력사는 조달하는 원부자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지 법/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3.3.11)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존중 및 침해 방지

협력사는 모든 경영 및 사업 활동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협력사는 제3자의 기술, 제품, 공정 등에 대한 부당한 사용, 복제, 위조 및 불법 유통을 금지한다. 협력사는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즉시 당사에 통보하고, 침해 예방 및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당사 또는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협력사의 책임 및 역할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는 디에스시 협력사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본 행동규범을 위반한 협력사가 적절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디에스시 계열사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모든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2~3차 협력회사들에게도 동등한 인권경영, 안전 보건, 환경 및 윤리 기준과 책임을 권고하여야 한다.